

창업동아리 운영 규정

제정 2016. 3. 1.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11. 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교”) 학생의 전공지식을 활용한 창업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창업동아리(이하 “동아리”)라 함은 학생들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아이디어, 신상품, 신기술 등을 사업화하여 창업능력의 함양과 수익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단체를 말한다.

제3조(회원자격) 동아리 회원은 본 대학의 재학생으로 하며 휴학 및 제적 시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타 대학 및 기업체 또는 그 연합체의 구성원인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 동아리 회원으로의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생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1. 동아리 운영위원
2. 동아리 운영 및 행사에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

제4조(등록요건)

1. 설립목적은 학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동아리 설립목적 및 연구과제에 대하여 동의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3. 동아리는 해당전공 재학생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의 특성상 타전공과도 연합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지도교수는 스쿨과 관계없이 동아리 전공과 관련된 지도교수를 선임할 수 있다.
4. 동아리의 인원은 2인 이상 이어야 한다.

제5조(지도교수 선정 및 임원 선출)

1. 지도교수는 본 대학 전임, 초빙교원 중에서 선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도교수가 사임 또는 기타사유로 결위 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동아리 등록 신청서를 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로 재제출하여야 한다.
3. 각 동아리의 지도교수는 1명으로 하되 다른 동아리의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있다.
4. 지도교수는 동아리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5. 지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후임 지도교수의 임기는 전임 지도교수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 동아리 임원이 선출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규등록) 동아리는 신규등록시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 학기 개강 30일 이내에 취업창

업교육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 중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창업동아리의 특성상 수시 등록도 가능하다.

1. 동아리 등록 신청서(서식1호)
2. 동아리 연간 활동 계획서(서식2호)
3. 동아리 회원 명단(서식3호)

제7조(재등록) 기존 동아리가 재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6조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제8조(행사승인) 동아리 대표자는 행사 7일 전에 행사계획서를 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행사) 각 동아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경진, 기능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교내·외 동아리 관련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장이 본 대학 학생지도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아리 활동내용이 설립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2. 활동이 학칙을 위반하였거나, 학교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3. 활동실적이 부진하거나, 학생활동 참여실적이 부진할 경우
4. 불법집회로 인하여 사법적 절차에 계류중인 경우
5. 배정 받은 동아리실과 비품에 대해 파손 및 오손, 구조변경을 한 경우
6. 기타 학교규정을 위반하여 동아리 단체가 징계를 받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켰을 경우

제11조(산업체 인사) 동아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련 산업체 인사를 초빙하여 상호 정보교환, 기술지도 및 협의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담당부서) ①창업동아리 운영 관리와 교육에 관한 업무는 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②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에서는 매학기 창업동아리 현황을 학생담당 부서에 제공한다.

③창업동아리 신규등록, 재등록, 행사계획서 등의 양식은 별도 사업에서 제공한 양식이 없는 한, 본 대학의 일반동아리 규정에 있는 양식을 사용한다.

제11조(재정 및 평가) 동아리의 운영경비는 회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 기준과 평가위원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호)

동아리 등록 신청서

				결 재	담 당	팀 장	처 장
구분 : 일반 (), 전공(선택)							
동아리명	국문			구 분	신규등록	선택	창립연도
	영문				재 등록	선택	
회원수		명 (남)(여)					
동아리 소개 및 활동목적							
직책	구분	성 명	스쿨(전공)	학년	학 번	전화번호(휴대폰)	
회 장							
부 회 장							
총 무							
지도교수	소속 스쿨(전공)			성 명		전 화 번 호	

우리 대학 일반/전공 동아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동아리 신규/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 장 스쿨(전공) : _____
성 명 : _____ (인)

지도교수 스쿨(전공) : _____
성 명 : _____ (인)

(담당 부서장) 귀하

※ 첨부서류 1. 동아리 연간 활동 계획서 1부(서식2호), 2. 동아리 회원 명단 1부(서식3호)
(서식 2호)

동아리 연간 활동 계획서

(2 . . . 현재)

구분	활동 계획(내용, 해당 기관 및 단체 등)	비고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서식 3호)

동아리회원 명단

(20 . . . 현재)

연번	성명	스쿨(전공)	학년	학번	연락처	서명	비고
1							회장
2							부회장
3							총무
4							기타(휴학등)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계	명	남() 여()					